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43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김태호 · 박충권 · 우재준
김기웅 · 권영진 · 최형두
신성범 · 서천호 · 조승환
안철수 · 엄태영 · 이종배
이양수 · 정점식 · 강명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

9호까지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u>
<u><신 설></u>	<u>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u>
<u><신 설></u>	<u>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u>
<u>7. (생 략)</u>	<u>10. (현행 제7호와 같음)</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